



고용노동부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

수신 비 네트워크 김 현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(비*****스)

1. 관련: 직업안정법 제23조, 제25조, 제41조, 제48조,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8조
2.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귀하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중이오니 ^{03.13} ~~2018.02.09~~ ^(화) ~~까지~~ 요청자료를 지참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신고내용>

- '비 네트워크'가 운영하는 '바 바(<http://ba a.com>)'에 구인업체의 주소, 업체명, 구인자명 등이 명확하지 않은 구인광고들을 게재하고 있음.

- 출석기한: ^{03.13 (화)} ~~2018.02.09 (금)~~ 15:00 까지
- 출석장소: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
(위치: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, 의정부지청 3층)
- 요청자료: 사업자등록증,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,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반박하는 자료 일체
- 담당자: 손성달 주무관(031-850-7714)

3. 출석 전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출석일시를 확정하시기 바라며, 부득이 기한 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불임 '의견제출서'를 작성하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 신고내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(팩스: 0505-130-0055, 팩스 송부 후 확인전화 필수)

4. 만약 위 기한 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 및 자료제출 시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50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1.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부(별도첨부).

2. 의견제출서(별도첨부) 1부. 끝.

전화번호 031-850-7714 팩스번호 0505-130-0055 / violet315@korea.kr / 비공개(5,7)